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의거,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(이하 '당사')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### 1. 이용목적

가.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
나. 채권추심

다. 마케팅

라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### 2. 신용정보의 종류

가. 식별정보

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·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나. 신용거래정보

- 개인신용거래정보

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가계당좌·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

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 등

- 기업신용거래정보

가계당좌·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 정보, 어음

·수표 부도정보, 대출·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

다. 금융질서문란정보

-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라. 신용능력정보

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

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마. 공공기록정보

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

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**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**

가. 제공대상자

- 신용정보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, 여신금융협회 등), 신용정보회사(코리아크레딧뷰로(주), 한국신용정보(주), 한국신용평가정보(주) 등),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
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/수집/보관/제공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식별정보
- 신용거래정보
- 금융질서문란정보
- 신용능력정보

## **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**

### 가. 보유 및 이용기간

- 보유기간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한 기간동안

### 나. 파기절차

- 해당 목적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(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)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
- 해당 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이용

### 다. 파기방법

-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
-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

## **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**

- 제공 대상 기관 : 당사로부터 업무처리를 수탁 받은 업체
- 제공 목적 : 채권추심업무 등

## **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**

### (1)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

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 37 조제 1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단,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.

### (2) 연락중지청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 37 조제 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(3)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/삭제 청구권 등

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 38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/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(4) 신용정보 이용/제공사실 조회/통지요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 3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/제공한 내역을 조회/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(5) 손해배상청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 43 조에 의거,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동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(6)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 36 조에 의거, 당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 근거로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해당 경우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(7)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 33 조의 2 에 의거,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,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(8)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

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 36 조의 2 에 의거, 당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시 결과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신용정보관리/보호인

- 성명 : 권웅구

- 부서 : 1688-9328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0 Volvo빌딩 2층